

2026년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 모집 안내

1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 운영 현황

□ 운영 목적

-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 운영을 통한 전임교원의 산학협력 활동 강화 촉진

※ 추진근거: 강원대학교 전임교원 임용규정 제22조(산학협력중점교수의 지정 및 철회)

□ 지정형 산중교수 지정

- 지정대상: 강원대학교 전임교원(삼척 포함,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 제외)
- 지정분야

① 지학협력분야

- 연구비 수주, 기술료 수입, 창업지원, 산학교육, 기업지원, 학생 활동지도, 지학협력 예산확보, 공공기관 및 단체활동, 기타 실적 등 우수 교원 지정

② 창업협력분야

- 창업교원 중 연매출액 또는 투자유치액 실적 우수 교원 지정

□ 지정형 산중교수 혜택사항

- ① 전임교원 업적평가 [1.2.1.보직] 항목 100점 부여
- ② 교수 책임시간 3시간 감면(타 제도 감면시간과 중복 불가)

2 운영 계획(안)

□ 지정형 산중교수 모집

- 분야별 모집인원

분야	지정 및 신규 모집 인원(명)		비고
	신규	재지정(현원)	
지학협력	00명	8명	글로컬대학30 정량적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모집인원 제한없이 모집하되, 선정평가를 통해 최종 선발 인원 확정 예정
창업협력	00명	9명	
합계	00명	17명	

□ 신청방법

- 제출서류(증빙서류 포함) 작성하여 공문 제출
 - 공통사항 : 지정신청서(개인정보활용동의 내용 포함)
 - 지학협력분야 : 활동계획서, 증빙서류(실적 확인서 등)
 - 창업협력분야 : 세부내역, 증빙서류(사업자등록증, 매출증빙서류 등)
- 유의사항: 지정 신청 시, 학사 운영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학부(과)내 사전 회의 및 학부(과)장 승인 후 신청

□ 선정평가

- 평가방법 : 선정위원회 개최를 통한 정성 및 정량 평가
 - 정성평가 : 제출된 활동계획서의 구체성, 산학협력 기여도, 학교발전 기여도 등 평가
 - 정량평가* : '25년 전임교원 업적평가 내 산학협력 관련 활동 실적 평가
 - * 산학협력단에서 관련 부서에 요청하여 평가 대상자 실적 확인 예정
 - 재지정 대상자의 경우, 별도의 정성·정량평가 없이 '25년도 성과점검 결과로 선정평가 실시

□ 추진일정



3 2026년 성과점검 추진(예정)

□ 일정 : 2026. 11월 중

□ 실적기간

- 지학협력분야
 - 필수항목 : 2025. 10. ~ 2026. 11.
 - 선택항목 : 2025. 3. ~ 2026. 2. (교원 업적평가 실적기간과 동일)

○ 창업협력분야

- 필수항목, 선택항목 : 2025. 10. ~ 2026. 11.

□ 점검방법 : 성과점검위원회 개최를 통한 정량평가

○ 분야별 점검기준

① 지학협력분야

- (필수항목) ①취업지원 2건, ②산학협력 유관기관 프로그램 참여 4회
- (선택항목) 항목별 합계점수 400점 이상 총족

점검항목		배점기준		실적 인정기준
[필수] 산학협력 유관기관 프로그램 참여(4회)		20점 × 최대 10회		• 산학협력단, KNU창업혁신원 등 프로그램 참여 실적
[필수] 취업지원(2회)	인턴십 및 현장실습지도방문	50점 × 최대 2회		• 취업지원과 운영 실적
	취창업 강좌 운영	25점 × 최대 4회		• 단과대학, 학과 취창업 특강 운영 실적
연구비 수주	5천만원 이상	100점		
	5천만원 미만 ~ 2천만원 이상	75점		• R&D과제, 대응자금 제외
	2천만원 미만	50점		
기술료 수입(특허)	15백만원 이상	100점		• 관리 누적 기술료수입 실적(입금일 기준)
	10백만원 이상 ~ 15백만원 미만	75점		
	10백만원 미만	50점		
기술료 수입(노하우)	5백만원 이상	30점		
	5백만원 미만	15점		
지식재산권	특허등록	20점		• 지식재산권 실적(출원 및 등록일 기준)
	특허출원	10점		
창업지원	창업동아리 지도교수	10점	최대 120점	• KNU창업혁신원 창업지원 실적
	학생 창업지원	30점		
산학교육	캡스톤디자인	10점 × 최대 5회		• 캡스톤디자인 지도교수 실적
기업지원	idea Lab	10점 × 최대 5회		• 기업지원 실적
	산업체 기술지도	5점 × 최대 10회		
	재직자 교육	5점 × 최대 10회		
학생활동지도	동아리, 학습프로그램, 공모전	10점 × 최대 5건		• 학습, 진로개발 목적 동아리 지도교수 실적에 한해 인정
지학협력 예산확보	1억원 이상	100점		• 연구비 수주 실적을 제외한 자자체 보조금 등 • 자자체·산업체 대응자금 포함
	5천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	75점		
	5천만원 미만	50점		
공공기관 및 단체활동	위원회 및 기구의 장	20점	최대 150점	•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교육기관, 공공기관 단체의 위원회 및 기구의 장 또는 위원
	위원회 및 기가의 위원	10점		
기타 실적	지학협력 관련 활동	10점 × 최대 10건		• 전문가 자문활동 • 자자체 현안사업, 국책사업 포럼 및 세미나 참석 • 그 외 산학협력단 성과점검위원회에서 지학협력 관련 활동으로 인정한 실적

2 창업 협력 분야

- (필수항목) 산학협력 유관기관 프로그램 참여 4회
- (선택항목) 연매출액 또는 투자유치 중 1개 이상 실적 충족

점검항목	실적 인정기준
[필수] 산학협력 유관기관 프로그램 참여(4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산학협력단, KNU창업혁신원 등 프로그램 참여 실적
[선택 1] 연 매출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연간 매출액 2억원 이상 (창업 5년 미만 또는 임용 5년 미만 교원의 경우, 1억원 이상)
[선택 2] 투자유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투자유치 총 1억원 이상 (창업 5년 미만 또는 임용 5년 미만 교원의 경우, 5천만원 이상)• 유치금액에 따라 지정기간 차등(10억원 미만 1년 / 10억원 이상 2년)

※ 투자유치 10억원 이상으로 2년간 재지정 된 교원의 경우, 필수 이행사항(산학협력 유관기관 프로그램 참여 4회) 이행 유무로 재지정 선정

4

유의사항

□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저정철회

- 관련규정*에 따른 연구년 교원의 경우,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 수행 불가

* 「강원대학교 전임교원의 국외파견 및 연구년에 관한 규정」

제 37조(연구년 교원의 책무) 연구년을 수행하는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⋮

4. 학내 보직 수행 금지(다만, 총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연구소장 등 연구 관련 수행 허용)

- 성과점검 실적 기준 미충족 시
- 전임교원 업적평가 기준 징계에 해당하는 사안 발생 시
- 지정철회 교원의 경우 향후 2년간 재신청 불가, 단, 연구년으로 저정철회 된 교원의 경우는 예외로 함